

## 사 례 36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 성명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8 손배청구

신 청 인 : 빗○○○ ○○○○

피신청인 : (주)케이엠에이치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1. 16.

###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절도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얼굴, 목소리, 이름, 국적, 사는 집 등을 방송에 모두 공개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범죄용의자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 등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었으면서도 정작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호 없이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가 방송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정대상보도의 저작자인 CJ E&M(주)이 향후 해당 보도를 방송 또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경위 포함)을 담은 공식 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디원 TV** : (1)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1화 - 고독한 추격』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4일자 19:30)
- **내 용** : ▷ 내레이션 : 고시원에 사는 이탈리아 여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



- ▷ 경찰 1 : 문을 열어놨었어?
- ▷ 경찰 2 : 시정을 안해 놔드립니다.
- ▷ 내레이션 : 외국인 아가씨가 전 재산인 노트북을 도난당해 버렸다.



- ▷ 경찰 2 : How old are u?
- ▷ 신청인 : 스물한살
- ▷ 내레이션 : 도둑 맞은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수라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신청인 방을 비추며) 놀란 가슴을 달래주는 건 막내 경호 몫이다.



▷ 경찰 2 : 바로 해야지 신고를.... 어제 밤에 라스트 나이트 바로 신고 해야지



▷ 신청인 : 근데 저는 전화번호 몰랐어요 , 그 남자 아래 통화 했어요 이야기 했어요

▷ 경찰 2 : 관리자한테? 매니저한테?

▷ 신청인 : 네 근데 그..



▷ 경찰 2 : 답에 혹시 뭐 하면은, 일 있으면 일 생기면 112로 해요 전화.

▷ 신청인 : 네 지금 알았어요

▷ 내레이션 : 지문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 경찰 3 : 지문은 없어요

▷ 경찰 2 : 없어, 핑거프린터 없어

▷ 신청인 : 아, 죽겠다..

▷ 경찰 1 : 문 시정하고요 같이 가야죠 저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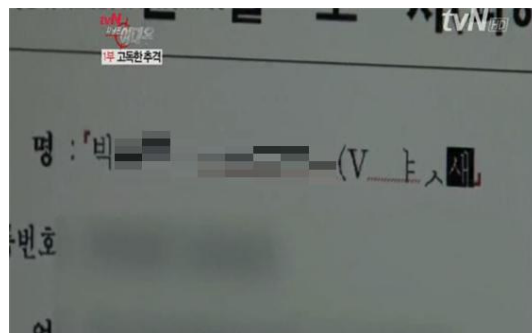
- ▷ 신청인 : 어디?
- ▷ 경찰 1 : 경찰서
- ▷ 신청인 : 네... 많이(오래) 걸릴까요?
- ▷ 경찰 1 : 아니요 또 모셔다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문 잠그고  
(경찰서 안)



▷ 내레이션 : (통역을 부를 만한 상황도 아니고 아가씨가 한국말을 알아듣긴 하니 되는 대로 조서를 써보기로 했는데

▷ 경찰(빨간옷) : 빅○○○○ ○..○...○...

(신청인 성명이 화면에 그대로 다남)



- ▷ 내레이션 :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일단 영어자판 치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인다.
- ▷ 경찰 :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잉?
- ▷ 신청인 : (신청인 얼굴화면 ZOOM UP하면서)1월? 2월? 경찰? 경찰에 갔어요.

(신청인 얼굴을 경찰얼굴과 함께 크게 띄우며)



- ▷ 내레이션 : 물어보는 사람도 속이타고 무슨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속이 타고 답답한 상황을 경호가 부드럽게 넘겨준다
  - ▷ 경찰(경호) :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 ▷ 신청인 : 컴퓨터 없어요...저는 컴퓨터로 매일매일 이야기 했어요
  - ▷ 경찰(경호) : 엄마랑?
  - ▷ 신청인 : 네 엄마랑 남동생이랑
  - ▷ 신청인 : 한국사람...
  - ▷ 내레이션 :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엄마 동생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던 노트북을 도둑 맞았으니 오죽 속이 상할까?
  - ▷ 경찰(경호) : 도둑 물건 훔쳐간 사람 잡는데 잡아줄게요
  - ▷ 신청인 : 진짜요?
  - ▷ 경찰(경호) : 하이튼, 잡는, 범인, 도둑놈,
  - ▷ 나레이션 : 어떻게든 해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 팀원들도 똑 같은 마음 일꺼다.
- **디원 TV** : (2)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9화』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4일자 20:25)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2월 8일까지 금 5,5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향후 피신청인은 원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가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3. CJ E&M(주)은 해당 원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가 향후 방송 또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경위 포함)을 담은 공식 문서를 신청인에게 2월 8일까지 전달하도록 한다.
4.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은 향후 본 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CJ E&M(주)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1. 28.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500,000원 지급

## 사 례 37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78·79, 2013서울조정80·81(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황○○ 외 3인,  
2. 김○○ 외 4인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1. 29.

##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범죄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근무 중인 신청인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보도내용과 무관한 본인들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개인의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생업인 분양업무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총 1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신청인 1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각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했으며(조정성립사항 1. 참조), 신청인 2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조정성립사항 2. 참조).

## 조정대상보도 1

■ **SBS-TV** :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4일자 11:00)

■ **내 용** : ▷ 진행자 :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지를 거짓으로 분양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기업체 인데요. 갈수록 그 방식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주로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등기도 하지 않고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아 부동산을 팔고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략)

▷ 진행자 : 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사람을 고용한 후에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다단계 판매 유형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또한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잠적하는 등 펀드식 투자자 모집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경화면에 신청인들 등장]



(후략)

## 조정대상보도 2

- **SBSi**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4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SBS-TV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SBSi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제목 : 본 방송은 지난 1월 24일 ‘SBS 생활경제’에서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면서 ○○ ○○○○○ ○○○ 모델하우스의 팀장 및 직원들이 상담하고 있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팀장과 직원들은 해당 방송 내용인 기획부동산 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황○○ : 60,000,000원

홍○○, 양○○, 신○○ : 40,000,000원

김○○, 김△△, 최○○, 황○○, 정○○ : 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 1. 보도문

**가. 제 목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 지난 1월 24일자 SBS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에서 사용한 ○○ ○○○○○ ○○○ 모델하우스의 팀장 및 직원들의 근무 모습은 해당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3년 2월 22일까지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들 각자에게 2013년 2월 27일까지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성 명	금 액
신청인 황○○	7,000,000원
신청인 홍○○	5,000,000원
신청인 신○○	3,000,000원
신청인 양○○	3,000,000원

5. 신청인들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3.

## 조정성립사항 2

### 1. 보도문

가. 제 목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 지난 1월 24일자 SBS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에서 사용한 ○○ ○○○○○ ○○○ 모델하우스의 팀장 및 직원들의 근무 모습은 해당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3년 2월 22일까지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들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3.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SBS-TV** :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9일자 11:2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1, 2 참조>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지급

## 사 례 38

온라인 도박 중독 피해를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13, 2013서울조정414(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3. 27.

##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온라인 도박 중독 피해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고 신청인이 기초수급자 대상자이며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최대한 초상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피신청인의 촬영에 응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얼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실어, 신청인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기초수급자인 사실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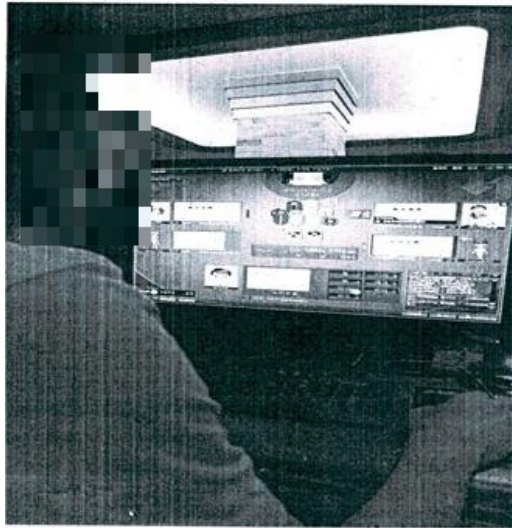
## 조정대상보도 1

■ **중앙Sunday** :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8면)

■ **내 용** :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1. “빚이 5억 원입니다.” 김 모(45)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다. 직장을 잃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것도 모자라 폐결핵까지 걸렸다. 어두운 PC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줄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라. 최근에는 뇌종양까지 생겨 전전공공하고 있다. 김씨는 “웹보드 게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한탄했다. 처음 시작한 건 14년 전. 누구나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재미 삼아 하던 고스톱·포커 게임이었다. 하지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상을 만나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환전상을 알고부터 게임머니가 곧 현금이 됐고 게임이 직업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게임용 아바타 환불 건으로 NHN·한계임을 상대로 소송을 건 상태다. 4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중략)

게임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게임 홍보 담당 황○○ 과장은 “게임회사들도 불법환전상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며 “다양한 근절 대책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고 있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고액 베팅 금지 등 문화부 지침 이행 ▶불법환전 신고센터 등 업계 공동 대응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시행 중이다.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환전상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바꿔 수사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가 아닌 합법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중앙Sunday :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4월 12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4. 08.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사 례 39

신청인의 촬영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직원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임의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65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이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0.

###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상에 대한 기사에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 및 이름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명백하게 촬영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신청인이 요금표만 찍겠다는 약속을 한 후, 이를 어기고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청인은 전 남편의 폭력 성향이 심하여 신청인의 취업 및 근무지를 전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신문에 신청인의 초상과 이름이 여과 없이 보도되어 피해가 크다면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이투데이** :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상』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 **내 용**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330원 인상된 27일 오전 신공항 톨게이트의 요금소에 가격 조정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대교 등 전국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4월 30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4. 22.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사 례 40

영화 홍보 차 내한한 미국 영화배우 월 스미스와 사진을 찍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592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파이미디어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5. 13.

###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미국 영화배우 월 스미스의 내한 행사를 보도하며 팬으로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던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공의 이익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무단으로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티비리포트 :** 『월 스미스 ‘아리따운 여성팬과 셀카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내 용 :** 할리우드 배우 월 스미스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외화 ‘애프터 어스’(M. 나이트 샤말란 감독) 공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팬들과 만남을 갖고 있다.

월 스미스, 제이든 스미스 부자가 출연하는 ‘애프터 어스’는 3072년 인류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지구에 불시착한 아버지와 아들이 공격적으로 진화한 생명체들에 맞서 생존이 걸린 극한의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로 오는 30일 전 세계 최초 개봉한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6월 5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5. 27.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사 례 41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빙수를 먹고 있는 신청인들의 초상을 임의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부산조정53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외 2인

**피신청인 :** 제이씨엔엘산중양방송주식회사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3. 08. 19.

###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지역 맛집을 소개하면서 신청인들이 팔빙수를 먹는 장면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촬영 당시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였고, 특히 신청인1의 경우 눈 성형 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인들을 만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방송으로 인해 주변에서 수술 부작용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각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700,000원, 신청인 2와 신청인 3에게 각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JCN 울산중양방송 :** 김PD의 맛짱 프로그램 『팔빙수편』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8일자 17:29) (2013년 7월 18일자 10:28)
- **내 용 :** (내용 생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3에게 각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8. 31.까지 신청인 1에게 금 700,000원, 신청인 2 및 3에게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만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8. 26.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신청인 1에게 손해배상금 700,000원, 신청인 2와 신청인 3에게 손해배상금 각 300,000원 지급

## 사 례 42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에 관해 보도하면서 마트에서 시식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강원조정20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삼척문화방송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13. 10. 24.

###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동해시 관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예고에 관해 보도하면서 마트에서 시식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촬영 당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이후 다른 내용 보도 시에도 신청인의 초상이 담긴 영상을 여러 차례 재사용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조정대상보도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보도된 영상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며,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영상에도 방송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삼척MBC-TV :** MBC 뉴스데스크(삼척) 프로그램 『대형마트 영업제한 행정예고, 다음달 시행 예정』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9일자 20:40)
- **내 용 :** 강원도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와 관련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도내 18개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표준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가 점포가 의무휴업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세무 당국이 발행한 농수산물 매출 증명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동안 농산품의 범위 내 매출액 비중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했던 논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의 지적을 반영해, 둘째와 넷째주로 못 박았던 의무휴업일을 대형마트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빠르면 다음 달 중 각 시군의 조례가 재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삼척문화방송(삼척MBC-TV)은 신청인에게 2013년 11월 30일까지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11월 8일까지 조정대상방송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보도된 영상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 영상에도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3. 제항 내지 제2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11. 07.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0,000원 지급

## 사 례 43

소아암 치료법에 관해 보도하면서 환자인 신청인 자녀 및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728 손배청구

**신 청 인 :** 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채널에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3. 12. 04.

###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소아암에 양성자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양성자 치료를 받고 있는 신청인의 자녀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가족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촬영 당시 초상을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위 보도로 인해 피신청인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촬영에 응했다는 주변의 오해도 받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해당 방송을 여러 차례 재방송하고 타 방송사에 이를 재판매 하기도 하여 이 내용이 확산된 피해를 입었다며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채널 A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에서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방송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시 보기 화면에 일정한 안내 문구를 게시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게시된 다음과 네이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방송분이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향후 신청인이 조정대상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통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피신청인이 배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채널 A :**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프로그램 『9회 - 암 4부』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1일자 21:50, 7월 25일자 00:10, 7월 27일자 11:20, 7월 30일자 02:20, 8월 2일자 13:00)
- **내 용 :** (방송 내용 생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4년 1월 22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채널 A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에서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방송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시 보기 화면에 ‘초상권 침해 문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불법으로 다운받아 배포할 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게시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게시된 다음과 네이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방송분이 게시되지 않도록 2014년 1월 20일까지 조치를 완료한다. 또한 향후 신청인이 조정대상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통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그 통지나 삭제를 요청받은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배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4. 피신청인이 위 3항 전단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일 1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1. 08.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00,000원 지급